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21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정을호·위성곤·안태준
강경숙·김준혁·이정문
박정현·조정식·김한규
전진숙·문대림·김영호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는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사실상 학교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의 명칭을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징수, 교장·교직원의 배치,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제24조에 따른 수업 등,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을 학교와 유사하게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관할청은 관할 지역 내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학교형태의 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생략)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u>사실상 학교의 형태로</u>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사실상 학교로-</u> ----- ----- -----.
<u><신 설></u>	1. <u>시설의 명칭을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u>
<u><신 설></u>	2. <u>제10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징수, 교장·교직원의 배치,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제24조에 따른 수업 등,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을 학교와 유사하게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u>
<u><신 설></u>	3. <u>그 밖에 학교와 유사한 형태</u>

<신 설>

제67조(벌칙) ① (생 략)

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경우

제65조의2(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관할청은 관할 지역 내 제4
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
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
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
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
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
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신
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u>학교형태의 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	--